#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진욱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009

발의연월일: 2024. 8. 20.

발 의 자:정진욱・박해철・이상식

양부남 • 이기헌 • 황정아

이개호 • 조인철 • 강준혁

박희승 · 오세희 의원

(11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인력·연구개발과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일정부분을 해당 투 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 고 있음.

그런데 기업들은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연구개발 장비에도 많은 투자를 하고 있으며, 첨단기술개발을 위한 생산시설과 동일한 수준의 고사양 고가의 장비 도입이 필요하나 첨단 연구개발을 위한 장비구입은 국가전략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해당하지 않아 세제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내국인의 국가전략기술 등 사업화 시설 투자에 대하여 세액공 제 혜택을 부여하면서, 중고품 투자는 제외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반도체 분야 국가전략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8인치 생산시설 투자 기 업의 경우 신규장비 수급문제로 중고장비 구매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이고, 중고장비 투자 비용 또한 신규장비 가격의 약 80% 수준이나, 해당 기업의 중고장비 투자는 세액공제 혜택에서 제외되고 있음. 또한, 중소업체의 경우 국가전략기술 사업의 특성상 장비가 고가이고 수급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 중고품을 쓰는 경우가 많음.

이에 기업의 연구개발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하여 연구개발 장비에 대한 투자도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과 같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와 관련한 중고품 투자에 대하여도 시설 투자 세액공제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완화하려는 것임 (안 제24조제1항).

법률 제 호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외한다"를 "제외하되, 국가 전략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한 중고품 투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한다.

제24조제1항제2호가목2) 중 "시설로서"를 "시설과 국가전략기술의 연구개발을 위한 장비로서"로, "정하는 시설"을 "정하는 시설과 장비"로,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을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등"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본문 중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을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을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등"으로, "2024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가목2) 중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을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을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등"으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구개발장비 투자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1항제2호가

목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4조(통합투자세액공제) ① 대	제24조(통합투자세액공제) ①
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	
는 자산에 투자(중고품 및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	
한 투자는 <u>제외한다.</u> 이하 이	<u>제외하되, 국가전략기술의</u>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제	사업화를 위한 시설 중 대통령
2호 각 목에 따른 기본공제 금	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한 중
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	고품 투자는 그러하지 아니하
액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u>다</u>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20	
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	
연도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제3	
호 각 목에 따른 기본공제 금	
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	
액을 공제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2	고계	금	оŊ
/	중제	TT	4

- 가. 기본공제 금액: 해당 과 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의 1 00분의 1(중견기업은 100 분의 5, 중소기업은 100분 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 다.
  - 1) (생략)
  - 2)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u>시설로서</u> 대통령 이로 <u>정하는 시설(이하 이 조에서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이라</u>한다)에 <u>2024년 12월 31일</u>까지 투자하는 경우: 100분의 15(중소기업은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금액

나. 추가공제 금액: 해당 과 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이

가
_
1) (현행과 같음)
2)
<u>시설과 국가전</u>
략기술의 연구개발을 위
<u>한 장비로서</u>
정하는 시설과 장비
국가
전략기술사업화시설등
-2025년 12월 31일
1}
-1.

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3년 간 연평균 투자 또는 취득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 의 3(국가전략기술사업화 시설의 경우에는 100분의 4)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추가공제 금액이 기본공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 금액의 2배를 그 한도로 한다.

- 3. 임시 투자 세액공제금액
  가. 기본공제 금액: 2023년 1
  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
  도에 투자한 금액의 100분
  의 3(중견기업은 100분의
  7, 중소기업은 100분의 1
  2)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
  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생 략)
  - 2) <u>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u> 설에 투자하는 경우: 제2 호가목2)에 따른 금액 나. (생 략)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
 설등
3
っ. 가
4) (~1~1~1~1~1~0)
1) (현행과 같음)
2) <u>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u>
<u>설등</u>
나. (현행과 같음)

(2)	$\sim$		(생	략)
$(\Delta)$		( <del>1</del> )	(7)	ゴノ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투자금액의 계산방법, 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금액의 계산 방법, 신성장사업화시설 및 <u>국</u> 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의 판정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u>국</u>
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등